

## 여름철 재확산방지 특별대책

장기간연휴, 오봉기간 등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 재확산방지와 단계적 완화의 관점에서부터 특별대책을 강구한다.

대상지역 홋카이도 전역

기간 2021년 7월 12일 (월) ~ 8월 22일 (일)

홋카이도의 중심도시이자 다른 지역과의 인적 왕래도 많은 삿포로시는 「중점지역」으로서, 한층 더 강화된 감염방지대책의 철저를 도모한다.

중점지역 삿포로시

기간 2021년 7월 12일 (월) ~ 7월 25일 (일)

※ 중점지역으로서의 요청·협력의뢰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만(홋카이도 전역과 같은 대책으로 이행), 신규 감염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5명에 근접하는 등 감염의 증가가 보이는 경우에는 대책의 연장을 포함해 강한 조치를 강구한다.

도 전역  
(삿포로시 제외)

【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①】

요청내용

(일상생활에서)

- ◆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변이로의 전이를 상정하고 「3밀 (밀폐·밀집·밀접)」, 「감염위험이 높은 「5가지 경우※」」 등의 방지나, 「사람과 사람과의 거리확보」 「마스크 착용」 「손씻기 등 손가락 소독」을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 ※ 음주를 수반하는 간담회 등, 많은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섭취, 마스크 없이의 대화,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, 공간 전환

(특히, 외출 시에는)

- ◆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※과 접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 ※ 고령자, 기저질환 있으신 분, 일부의 임신 후기이신 분
- ◆ 감염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, 삿포로시와의 불필요※한 왕래는 삼간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  - ※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, 식료·의약품·생필품 구입, 필요한 직장 출근,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주십시오. 또한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라도,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서 행동해 주십시오.
- ◆ 「긴급사태조치구역」 및 「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구역」과의 불필요한 왕래는 극도로 삼간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  - ※ 홋카이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는, 체온체크나 필요에 따라 PCR검사를 받는 등,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.
  - ※ 또한, 이동처에서는 「3밀」 방지를 포함해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, 특히 많은 인원(5명 이상)의 회식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기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「3밀」의 방지를 포함해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, 특히 많은 인원(5명 이상)의 회식은 삼가는 등 신중하게 행동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【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드리는 협력의뢰】

협력의뢰  
내용

- ◆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, 체온체크나 필요시 PCR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며,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귀성이나 여행을 삼간다. (협력의뢰) ※ 국가에서는 여름휴가기간 중 하네다공항, 이타미공항 등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 PCR검사, 항원정량검사를 실시할 예정.

## 【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②】

## 요청내용

(특히, 음식섭취 시에는)

◆ 감염 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.

(특조법제24조제9항)

◆ 노상·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,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.

(특조법제24조제9항)

◆ 음식섭취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, 단시간에, 과음을 하지 않고,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,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.

(「침묵식사 ~ 식사는 조용히, 대화는 마스크 ~」의 실천)

(특조법제24조제9항)

【이벤트 개최에 관한 요청】

인원수  
상한 및  
수용률  
(※1)

- 인원수 상한(어느쪽이든 큰 쪽)  
5,000명 또는 수용인수 50% 이내 (10,000명 이내)
- 수용률  
[100% 이내] 큰 소리로의 환호·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(※2)  
[ 50% 이내] 큰 소리로의 환호·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(※3)  
※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·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,  
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.

특조법제24조제9항

※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(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)

※2 클래식 음악 콘서트, 연극 등, 무용, 전통예능, 예능·연예, 공연·식전, 전시회 등,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 (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「큰 소리로의 환호·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」로 취급할 수 있다.)

※3 록, 팝콘서트, 스포츠 이벤트, 공연경기, 공연, 라이브하우스·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(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, 동일그룹 (5명 이내에 한함)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, 즉 수용률은 50%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)

요청내용

- ◆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이벤트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국가의 접촉확인 앱 (COCOA) 도입,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 철저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1,000명을 넘는 이벤트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※ 7월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,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.

※ 8월 23일 이후에 개최 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 대책 기간 중에는  
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티켓의 신규 판매를 중지할 것.

## 【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· 협력의뢰】

요청·  
협력의뢰  
내용

- ◆ 재택근무(텔레워크), 시차출근, 자전거통근 등,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조치를 실시한다. (협력의뢰)
- ◆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,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요청내용

- ◆ 위생관리 매뉴얼 (2021.4.28 개정)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,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아동·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, 학급·학년·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. 이 경우,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동아리활동은 위생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대학, 전문학교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분할수업 등의 실시로 3밀을 방지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【공립시설】

공립시설

- ◆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입장정리 등,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.

중점지역



요청내용

(일상생활에서)

◆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변이로의 전이를 상정하고 「3밀 (밀폐·밀집·밀접)」, 「감염위험이 높은 「5가지 경우※」 등의 방이나, 「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」 「마스크 착용」 「손씻기 등 손가락 소독」 을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 ※ 음주를 수반하는 간담회 등, 많은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섭취, 마스크 없이의 대화,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, 공간 전환

(특히, 외출시에는)

◆ 감염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, 불필요※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.

(특조법제24조제9항)

※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, 식료·의약품·생필품 구입, 필요한 직장 출근,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주십시오. 또한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라도,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서 행동해 주십시오.

◆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※과 접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한다.

(특조법제24조제9항) ※ 고령자, 기저질환 있으신 분, 일부의 임신 후기이신 분

◆ 「긴급사태조치구역」 및 「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구역」과의 불필요한 왕래는 극도로 삼간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※ 홋카이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는, 체온체크나 필요에 따라 PCR검사를 받는 등,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.

※ 또한, 이동처에서는 「3밀」 방지를 포함해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, 특히 많은 인원 (5명 이상) 의 회식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

◆ 기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「3밀」의 방지를 포함해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, 특히 많은 인원(5명 이상)의 회식은 삼가는 등 신중하게 행동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【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드리는 협력의뢰】

협력의뢰 내용

◆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, 체온체크나 필요시 PCR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며,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귀성이나 여행을 삼간다. (협력의뢰) ※ 국가에서는 여름휴가 기간 중 하네다공항, 이타미공항 등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 PCR검사, 항원정량검사를 실시할 예정.

요청내용

(특히, 음식섭취 시에는)

◆ 21시 이후, 음식점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◆ 감염 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.  
(특조법제24조제9항)

◆ 노상·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,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.  
(특조법제24조제9항)

◆ 음식섭취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, 단시간에, 과음을 하지 않고,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,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.  
(「침묵식사 ~ 식사는 조용히, 대화는 마스크 ~」의 실천)  
(특조법제24조제9항)

대상시설

[음식점] 음식점(주점 포함), 카페 등 (배달·테이크아웃 제외)  
 [유흥시설] 카바레,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

요청내용

- ◆ 영업시간은, **5시부터 21시까지**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주류제공 (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 포함) 은, **11시부터 20시까지**.  
 ( 특조법제24조제9항 )
- ◆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  -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확보 등의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.
  - 손(가락) 소독설비의 설치      • 식사중 이외에는 마스크착용 권장      • 시설의 환기 실시
  - 입장자의 정리·유도      • 사업장 소독      • 발열 및 그 이외의 증상이 있는 자의 입장 금지
  -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 (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)
  - 코로나19접촉확인앱(COCOA) 및 핫카이도 코로나 통지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요청
  - 종업원들의 검사 권장      • 일행(동일그룹)의 입점은 원칙상 4인 이내
  - 체재시간의 제한(2시간 정도를 기준) 등에 의해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.
  - 점내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(침묵식사~식사는 조용히, 대화는 마스크~의 실천) 등
- ◆ 음식이 주 영업인 점포 등에 대해서는,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.  
 (특조법제24조제9항)

※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

【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금】

중소기업·개인사업자: 1점포마다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2.5만엔 ~ 7.5만엔      대기업: 1점포마다 하루당 매출액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만엔

【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· 협력의뢰】

인원수  
상한 및  
수용률  
(※1)

- 인원수 상한(어느쪽이든 큰 쪽)  
**5,000명** 또는 수용인수 **50%** 이내 (**10,000명** 이내)
  - 수용률  
**[100% 이내]** 큰 소리로의 환호 ·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(※2)  
**[ 50% 이내]** 큰 소리로의 환호 · 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(※3)
- ※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·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,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.

특조법제24조제9항

- ※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(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)
- ※2 클래식 음악 콘서트, 연극 등, 무용, 전통예능, 예능 · 연예, 공연 · 식전, 전시회 등,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 (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「큰 소리로의 환호 ·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」로 취급할 수 있다.)
- ※3 록, 팝콘서트, 스포츠 이벤트, 공연경기, 공연, 라이브하우스 · 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(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, 동일그룹 (5명 이내에 한함)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, 즉 수용률은 50%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)

요청·  
협력의뢰  
내용

- ◆영업시간은 **21시까지**(무관객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는 제외) (협력의뢰)
- ◆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, 주류제공(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)을 하지 않는다. (협력의뢰)
- ◆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이벤트 전후의 **3밀**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국가의 접촉확인 앱 (COCOA) 도입,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**1,000명**을 넘는 이벤트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- ※ 7월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,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.
- ※ 7월 26일 이후에 개최 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 대책 기간 중에는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티켓의 신규 판매를 중지할 것.

요청·  
협력의뢰  
내용

- ◆ 직장의 출근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재택근무 (텔레워크) 활용 및 휴가 활용 촉진 등의 방안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 출근이나 로테이션 근무, 자전거 통근 등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.  
(협력의뢰)
- ◆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.  
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,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  
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, 입장정리 등,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.  
(협력의뢰)
- ◆ 주요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1시 이후, 야간소등한다. (협력의뢰)

요청내용

- ◆ 위생관리 매뉴얼 (2021.4.28 개정)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,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아동·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, 학급·학년·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. 이 경우,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동아리 활동은, 활동을 엄선 (시간, 인원수, 장소 등) 하여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실시 하고, 이러한 대책이 어려운 경우는 중지한다. 또한, 건강상태 다중체크를 함과 동시에 감염방지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- ◆ 대학, 전문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분할수업 등의 실시로 3밀을 방지한다. (특조법제24조제9항)

【공립시설】

공립시설

- ◆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하여 입장정리 등,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.